##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20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전재수・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조응천

권칠승 · 박광온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 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 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

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자격취소)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19조 중 "제15조에"를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15조에"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벌칙)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①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① -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	
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	
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	
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u>있다</u> .	있으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
	<u>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
	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
	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u>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u>
<u>&lt;신 설&gt;</u>	제11조의2(자격취소) 제12조에 따
	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
	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u>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u>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

제1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u>제15</u> 저 <u>조에</u>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 그램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격증을 다듬	른 사람에게	빌려준
<u>경우</u>		
1)10マ/ミ)ロ)		_n] 1 1

제19조(청문)		<u>제11</u>
조의2에 따라	과 자격을	취소하거
나 제15조여	<u>]</u>	

-----.

제19조의2(벌칙)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